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제정	1994. 2. 17.	총재결재	업무	5011-	173
개정	1994. 11. 21.	총재결재	업무	5011-	1102
	1995. 12. 15.	총재결재	자업	5011-	899
	1996. 12. 24.	총재결재	자업	5011-	661
	1998. 12. 23.	총재결재	금업	5011-	482
	1999. 6. 21.	총재결재	금업	5011-	246
	2000. 9. 21.	총재결재	금업	5011-	339
	2006. 6. 20.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535
	2008. 1. 25.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132
	2009. 1. 22.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123
	2009. 4. 3.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523
	2014. 7. 18.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1366
	2020. 9. 11.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1790
	2023. 2. 17.	총재결재	결제업무팀-		35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및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의 예금과 대출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예 금

제3조(예금의 종류) 예금은 당좌예금, 자금조정예금 및 별단예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예금거래약정) ① 한국은행은 당좌예금 또는 자금조정예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대상기관과 각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②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이하 “당좌거래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기준”이란 원칙적으로 <별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좌거래규정 제2조제3호제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2. 한국은행 업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자금중개, 은행공동망 참여, 증권결제 등과 관련하여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이하 “금융업무실장”이라 한다)이 예금거래 약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예금거래약정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이하 “한국

은행 취급점”이라 한다)별 관할지역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금융업무실장이 한국은행금융결제망(이하 “한은금융망”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거래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업무실장이 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한은금융망에서 탈퇴 또는 한은금융망 가입약정을 해지하는 기관은 당좌예금거래약정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당좌예금) ① 지급준비금, 지급결제자금 등은 당좌예금으로 수입한다.

② 거래대상기관은 다른 거래대상기관과의 지급결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당좌예금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금조정예금) 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규정」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예치하는 예수금은 자금조정예금으로 수입한다.

② 자금조정예금의 입금 및 출금 마감시각은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한은금융망의 일중당좌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 종료시각 후 10분까지로 한다.

제7조(별단예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그 밖에 법령으로 지정한 예수금 또는 일시적인 예수금은 별단예금으로 수입한다.

제8조(입금) ① 당좌예금 및 별단예금은 한국은행권,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한다.

②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그 계좌를 개설한 한국은행 취급점에 보유한 당좌예금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이체하여 입금한다.

제9조(지급) ① 당좌예금은 한국은행이 교부한 당좌수표의 제시나 한은금융망을 통한 지급신청, 금융결제원의 결제청구, 계좌이체신청 및 그 밖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자금조정예금은 계좌이체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그 계좌를 개설한 한국은행 취급점에 보유한 당좌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만기지급은 만기일 영업개시시각에 해당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좌로 자동이체방식으로 이체한다.

③ 별단예금은 자기앞수표나 지급청구서를 받아 지급한다.

제3장 대 출

제10조(대출의 구분) 대출은 어음대출,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및 상업어음재할인으로 구분한다.

제11조(대출거래약정) 한국은행은 대출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래대상기관과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12조(적격인정) ① 금융업무실장 또는 한국은행 지역본부장(이하 “한국은행

취급점장"이라 한다)은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의 담보증권 또는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이하 "대상증권"이라 한다)과 금융업무실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격성을 인정한다.

1. 「한국은행법」, 「은행법」,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규정과의 부합 여부
2. 금융통화위원회 지시사항과의 합치 여부
3. 용자한도, 금액, 비율, 기간 등의 적정 여부
4. 대상증권이 환어음인 경우 지급인의 인수 여부
5. 대상증권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대출세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대출을 위한 적격인정심사를 할 때 적격인정대상 담보증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의 신용증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기명식 양도배서 등이 있는지 담보증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출의 실행) ①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대출용어음(어음대출로 한정한다)과 대출담보증권 및 금융업무실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받아 대출을 실행한다. 다만, 그 서류는 한은금융망 등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담보 및 대출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담보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기명식 양도배서를 하거나 채권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등록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대출담보증권의 징구생략)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담보증권이 질권등록되어 있거나 담보증권보관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담보증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다른 취급점 적격인정증권 담보대출)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다른 취급점이 적격인정한 증권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제16조(담보의 보충) ①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담보증권의 시장가격을 매영업일 점검하여 대출세칙 제1조의3에 따른 담보인정가액이 기존 대출금에 미달하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추가로 받거나 이미 취득한 담보의 여유액을 다른 대출담보로 전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가 부족한 금융기관이 담보를 보충하지 않은 때에는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담보증권의 인정가액) 담보증권의 인정가액은 대출세칙 제1조의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2(담보증권의 처분) ①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지 않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한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증권의 처분은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보증권을 시장에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수익률은 해당 담보증권의 당일 중 시장수익률(시장수익률이 없을 경우 감독기관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수익률 등으로 한다)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매입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재할인어음의 추심위임)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필요한 경우 재할인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해당 재할인 어음의 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금융기관 보관증권의 관리) ①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한국은행이 추심위임한 어음 또는 증권을 금융기관의 결제모점에서 보관·관리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 결제모점의 통제를 받아 취급영업점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금융기관이 보관중인 대상증권에 한국은행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기명식 양도배서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보관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제4장 예금·대출이자 및 할인료 계산

제20조(이자 및 할인료계산) ① 예금 및 대출이자는 예금 및 대출 종류별 잔액에, 할인어음할인료는 어음금액에 각각 연이율 및 일수를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일중당좌대출이자(대출세칙 제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연이율을 곱한 후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일수계산은 한편넣기로 하되 말일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③ 이자 및 할인료를 계산할 때 원미만은 버린다.

제21조(예금이자 지급시기) ① 당좌예금 및 별단예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자금조정예금이자(별단)는 매영업일에 직전 영업일부터 당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제22조(대출이자 및 할인료 수취시기) ① 어음대출이자(대출세칙 제7조)는 매월 말일에 월중에 발생한 이자를 받는다. 다만, 말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최종영업일

에 말일까지의 이자를 받는다.

② 일중당좌대출이자는 매일 일중에 발생한 이자를 받는다.

③ 자금조정대출이자는 매영업일에 직전 영업일부터 당일까지의 이자를 받는다.

④ 할인어음할인료는 할인일에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받는다.

제23조(지연배상금)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회수가 지연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의 이율에 1%포인트를 더한 금리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자료요구) 한국은행은 예금 및 대출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수혜 기업체정보, 대출취급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수수료 징수) 한국은행은 예금 및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업무실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제재) 한국은행 취급점장은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업무실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대출금 회수, 대출한도 감축,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거래정지 또는 거래약정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적격인정신청서류 또는 대출신청서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기재함으로써 과다 또는 부당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한국은행에 제공된 담보증권 또는 한국은행이 추심위임한 재할인어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3. 예금 및 대출거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불응한 경우
4. 경영악화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 규정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27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업무실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4. 3. 15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한국은행 여신업무 취급규정」(업무501-1222, '84. 12. 31)과 「예금·대출이자 및 할인료 계산 등에 관한 규정」(업무501-663, 1982. 9. 7)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금에 대하여는 회수시까지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

부 칙 <1994. 11. 21>

이 규정은 1995.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15>

이 규정은 1996.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24>

이 세칙은 1996. 12.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23>

이 세칙은 1999. 1.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21>

이 세칙은 1999. 7. 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1>

이 세칙은 2000. 9. 3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0>

이 세칙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5>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8. 3. 7.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1. 22>

이 세칙은 2009. 2.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이 세칙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결제업무팀-601(2009.4.20 총재결재)에 의하여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

부 칙 <2014. 7. 18>

이 세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총재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및 제4조제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 시행당시 당좌예금거래약정체결기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2. 17>

이 세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당좌예금거래약정 체결 기준

구 분	기 준 내 용
1.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¹⁾	가. 은행 :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 - 1종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 2종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라. 보험회사 :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일 것 마. 그 밖의 기관 :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중 금융업무실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2. 예상 이용건수	약정 이후 1년간 한은금융망 이용건수가 월평균 50건 이상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3. 전담인력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²⁾ 사용자 2명, 단말기 ³⁾ 사용자 2명 등 총 4명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인이 겸무하지 않아야 한다.
4. 업무지속 능력	장애 또는 재해 등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2곳 이상의 장소(건물 기준)에 설치하여야 한다. ⁴⁾

주 : 1)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 기준에 명시된 재무건전성 비율 등은 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 직전 해당 기관 등이 공시한 것(신설기관의 경우 한은금융망 가입신청일이 속한 회계연도말의 예상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2) 한은금융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중 권한이 부여된 자의 승인이 필요한 중요 거래에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생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3) 한은금융망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에 등록된 참가기관의 PC를 말한다.

4) 「한국은행금융결제망 IT업무 운영절차」에 따라 공중망 회선으로 연결한 단말기도 포함한다.